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 용 노 동 부 장 이 재 갑

● **법률 제17433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근로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한다.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을 “제5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 중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6호 중 “제125조제1항”을 “제125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8조제2호와 제175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187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6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위반, 도급인의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법률 제174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93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을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 9. 29. 2014헌바254)의 취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신법조항은 적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에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2019. 9. 26. 2018헌바218)한바, 이를 반영하여 업무상 재해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개정된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6월 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이 재 갑

●법률 제17435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